



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간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서

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양 기관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, 우리 나라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 이해와 협동의 폭을 넓히며, 양 기관의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력하기로 합의한다.

제1조(목적)

이 협약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(이하 '양 기관' 이라 한다)의 평가인증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 원칙)

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호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을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

양 기관은 상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분야에서 상호 협력함은 물론 이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한다.

1. 평가인증 관련 전문 지식 및 정보의 교환
2. 직원 교류를 통한 전문성 개발
3.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 결과물 공유
4.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움 등 학술대회 공동 개최
5.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

제4조(비밀 엄수)

본 협약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상대 기관의 비밀 사항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재정)

양 기관의 협력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협력 내용에 따라 적절히 분담하되 협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, 국가 또는 유관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얻도록 노력한다.

제6조(협약 기간)

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 또한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약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효력은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.

제7조(협약의 변경)

양 기관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실무협의회의 설치)

양 기관은 협약의 합의사항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효력 발생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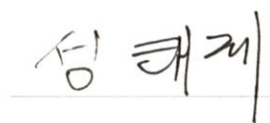
이 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 양 기관은 이 협약서에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제10조(기타)

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010년 11월 15일

한국대학교육협의회
사무총장 성 태 제



한국교육개발원
원장 안 덕 선

